



제 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업무범위 확대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21호)

2025. 1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업무범위 확대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1. 7.
3. 회 부 일: 2025. 1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이용자 신고 접수’를 추가해 신고 공백을 해소하고,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신고가 기관별로 이원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불법도박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신고 접수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5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Ⅲ. 검토의견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업무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으로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관한 신고의 접수를 추가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1. (생략) ② (생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관한 신고의 접수</u> 5.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u>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u>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u> ----- ----- -----.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18조의3(<u>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등</u>) ① <u>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u>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u>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u>의 조직·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u>불법사행산업의 감시</u>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1. <u>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u> 2. <u>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u>불법사행산업 등 감시·신고센터 등</u>) ① -----<u>감시 및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의 신고를</u>----- -----<u>불법사행산업 등 감시·신고센터</u>-----. ② -----<u>불법사행산업 등</u>----- ----- ----- -----. ③ -----<u>감시 및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의 감시</u>----- ----- -----. ④ (현행과 같음)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 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임¹⁾.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①사행산업

○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산하에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 센터를 두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사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아닌 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있음.

-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란 동법 제2조제3호가목2)에 따른 「관광진흥법」, 「한국마사회법」 등 사행산업을 규정한 개별법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로 보여짐3).

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3) 참고자료1: 불법사행산업 관련 금지·처벌 규정 참고

- 개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관한 신고의 접수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도박에 대한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실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불법도박의 규모는 102조 7,236억원이며, 불법도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범죄로서 신고율이 매우 낮고, 압수율⁴⁾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짐.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불법사행산업의 경우와 달리 신고의 접수 업무만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불법사행산업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현장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기능⁵⁾만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됨.

4) 실제 발생한 범죄들 중 압수범죄(실제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국가 범죄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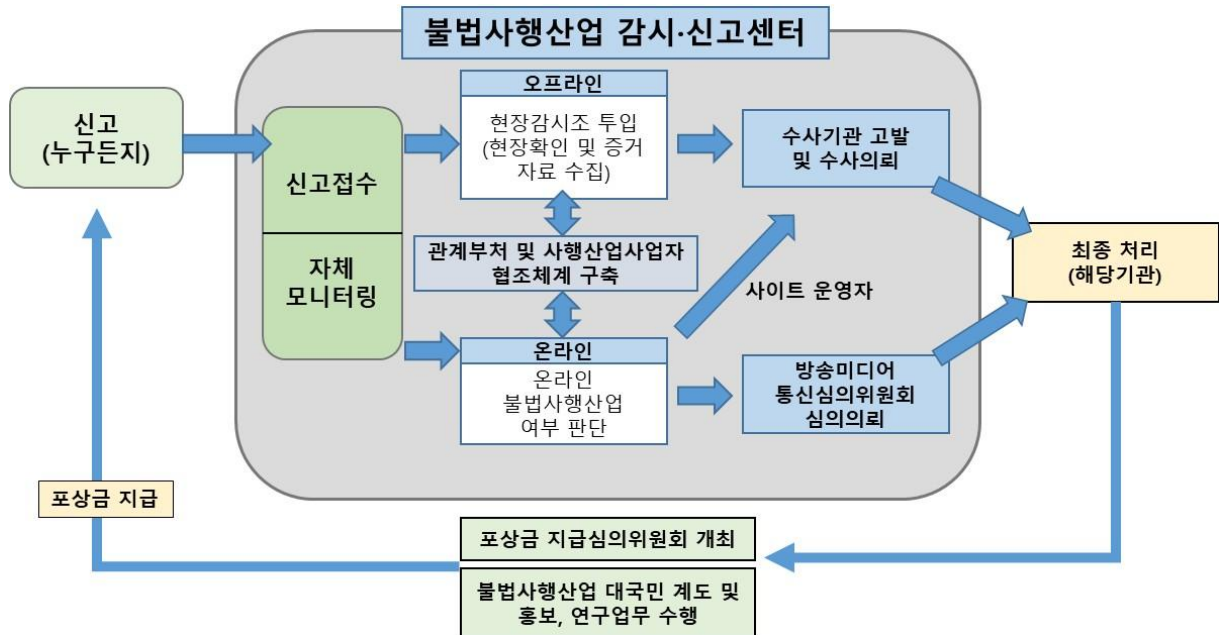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4.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업무 운영체계]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도박행위는 「형법」 제246조에 따른 범죄⁶⁾로서 경찰관 등 사법경찰관리가 이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가짐⁷⁾. 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우 이에 대한 조사 등 권한이 없음.
-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도박 신고에 대한 접수, 감시업무가 규정된다 하더라도 수사 권한이 없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여 경찰청에 이관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6)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둘째, 개정안에 따른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의 예산 및 인력증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센터의 감시인력은 2025년 기준 12명으로 2025년 10월까지 1인당 3,213건의 감시·신고건수를 처리하고 있음⁸⁾.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도박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될 경우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용자 도박행위에 대한 신고·단속·수사는 경찰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다 빠른 불법 도박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직 본래 목적과 같이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감독, 도박중독 예방·치유 등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8) 참고자료2: 불법사행산업 감시 관련 통계 참고

※참고자료1: 불법사행산업 관련 금지·처벌 규정

법률	조문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한국마사회법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 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8.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9. 제4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경륜·경정법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2.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경주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 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사행위 등의 상대가 된 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2. 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2: 불법사행산업 감시 관련 통계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사행 산업 운영자 감시 인력* 부족으로 1인당 업무 부담 증가

* 감시원 : '21년) 9명 → '22년) 10명 → '25년) 12명

- 연도별 신고센터 감시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10월
①불법사행 산업현장	단속지원	75	58	55	38	23
	수사의뢰	72	123	111	245	111
	자체종결*	58	92	132	626	376
	소 계	205	273	298	909	510
②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심의의뢰	17,462	20,561	37,390	39,084	26,308
	수사의뢰	2	15	13	22	32
	자체종결	1,478	6,381	10,947	11,333	11,708
	소 계	18,942	26,957	48,350	50,439	38,048
총 계		19,147	27,230	48,648	51,348	38,558

* ①영업장 폐업·허위·오인 신고 ②불법 관련자료 제출 불가 ③경찰 등 관계기관에 기신고한 사건 중복신고

- 연도별 신고센터 감시인력 1인당 처리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10월
전체 처리 건수*	19,147	27,230	48,648	51,348	38,558
1인당 처리 건수	2,127.4	2,723.0	4,864.8	5,134.8	3,213.2
감시인력(명)	9	10	10	10	12

* 처리건수 = 신고건수+자체 모니터링 건수